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-1362호

정릉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4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의거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정릉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, 같은조례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7년 11월 16일

성 북 구 청 장

1. 공고기간 : 2017. 11. 16.(목) ~ 2017. 12. 6.(수)

2. 직권해제 대상구역

구역명	위 치	직권해제 사유	근거
정릉1주택 재건축정비구역	성북구 정릉동 150-27일대	-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상 경과 및 토지등소유자 1/3이상 해제요청 -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%미만 (참여율 32.81%, 미개표)	도정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

3. 의견 제출

가. 위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(주거정비과)에 방문,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서 제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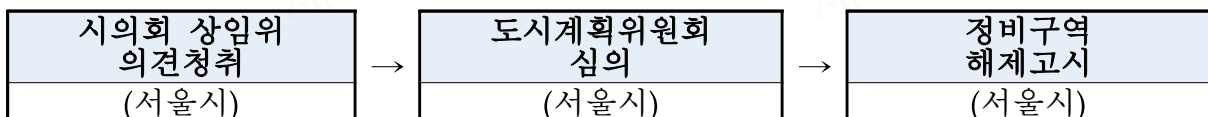
의견제출자의 성명 · 주소 · 생년월일 ·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, 직권해제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

다. 제출처

- 우편 또는 직접방문 :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 411번지)
성북구청 주거정비과(9층)

- 팩 스 : 02-2241-6545

4. 향후 절차



5. 문의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02-2241-2915)